

영상정보내부관리계획

1. 설치목적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제33조의2 및 제33조의3, 「개인정보 보호법」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, 노인학대 방지,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.

2. 관리책임자 및 운영담당자

- 가. 관리책임자 : 대표자(홍00) 031-304-1188
- 나. 운영담당자 : 시설장(이00) 000-0000-0000

3. 카메라대수 ·위치· 성능 및 촬영범위

- 가. 카메라 대수 : 총 38대
- 나. 카메라 위치 : 조리실 1대, 물리치료실 1대, 침실 18대, 엘리베이터 1대, 공용공간 (프로그램실 1대, 복도 10대, 옥상 3대, 현관1대)
외부 기타 공간 2대
 - *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장소 : 각 공동거실(어르신침실과 연결되는 복도포함), 침실, 현관, 물리(작업)치료실, 프로그램실, 식당, 엘리베이터
 - * CCTV를 설치하면 안 되는 장소 : 목욕실, 화장실, 발한실, 탈의실 등
- 다. 카메라 성능 : HD급(200만 화소)
- 라. 촬영범위 : 안전관리 및 보안에 중요한 공간 및 장소

4. 안내판 규격 및 부착장소

- 가. 안내판규격 : 210mm x 297mm
- 나. 부착장소 : 시설외부 1층 주차장

5. 촬영시간 : 24시간 상시 촬영

6. 영상정보 보관기간 : 60일

7. 영상정보 저장장치 또는 기기 : 사무실에 있는 DVR

8. 영상정보 열람장소 : 사무실

9. 영상정보 삭제주기 : 60일 경과시 자동 삭제

10. 영상정보 열람가능사유

- 가.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·제공하는 경우
- 나. 수급자가 자신의 생명·신체·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본인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
- 다. 수급자의 보호자가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
- 라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마.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
- 바.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- 사.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11. 영상정보 열람요청 시 제출서류

- 가. 영상정보 열람요청 : 청구인은 [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물(열람·존재확인)요청서]를 작성하여 제출
- 나. 청구인 :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정보주체와의 관계, 주소
- 다. 정보주체인적사항 : 성명, 전화번호, 생년월일, 주소
- 라. 청구내용 : 청구영상기록기간, 청구영상설치장소, 청구영상 목적 및 사유
- 마. 처리기한 10일 이내 : 열람의 허용여부,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여 [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영상자료 열람 등 요청에 대한 결정통지서]를 청구인에게 송부

12. 운영자의 금지행위

- 가.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
- 나.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(Zoom-in)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
- 다.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

13.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정보 관리대장[이용·열람·제공] : 서식별도

○ 구분: 이용/열람/제공 중 1개에 √ 표시

이용: 개인정보처리자가 영상정보 관리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(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, 운영담당자, 모니터링 담당자)

열람: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등 열람권한을 가진 자가 수급자의 안전 확인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에 녹화된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경우

제공: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가 아닌 보호자에게 주는 경우

※ 법 제33조의3에서 정한 영상정보의 이용·열람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(사본제공)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7조, 제1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혹은 개인이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보호 조치

○ 이용일자: 이용·열람·제공 일시 기재('23. 6. 30. 15:00 등).

○ 요청자: 책임 소재 명확화 및 사후 관리를 위해 신청기관 명칭과 취급자의 소속, 직급, 성명, 연락처 등을 기재

예시) 00경찰서 00계 직급 계장 홍길동 02-123-4567

○ 파일명/형태/내용

○ 이용목적/사유: 목적/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(노인학대, 안전사고 확인, 범죄수사 등)

○ 이용 시간

○ 이용 장소

○ 담당자 (성명과 서명)

○ 이용·열람·제공하는 근거: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 법령의 명칭과 조항을 기재

14.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설치·운영(내부 관리계획 이행 여부) 관리대장 : 서식별도

시설의 장은 월1회이상 내부관리계획 이행여부를 확인 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.